

<법무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및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정거래 위원회와 많은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가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차례 협의를 거듭하여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증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여,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필요하고 중요한 단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행정 및 형사처분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1.

법무부장관 박 상 기

<공정거래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공정위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의 실현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속고발제 개편문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공정위의 고발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지난해 법집행체계개선TF를 통해 1차적으로 개편문제를 검토하였고, 금년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2월에 유통 3법 및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우선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개편문제는 특위에서의 추가논의와 함께 법무부·검찰 등 관련부처간 실무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특위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보완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만,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부처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저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틀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경성담합은 가벌성이 큰 행위이긴 합니다만,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와 검찰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큼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사법당국이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성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담합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사항은 대부분 입법화가 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합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1.

공정거래위원장 김 상 조